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20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4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김예지 · 김상훈
김성원 · 박성훈 · 박정하
서천호 · 이준석 · 김형동
안철수 · 김정재 · 이양수
강명구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원, 전문인력 양성,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농업은 청년층의 농업과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,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는 전략적·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소멸 대응과 스마트농업 정책을 연계하고,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·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자금을 융자·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 및 제20조의2).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육성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청년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·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자금을 융자·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,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·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(이하 “육성지구”라 한다)를 지정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제15조(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 경우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육성지구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u>
② ~ ⑨ (생략) <신설>	② ~ ⑨ (현행과 같음) <u>제20조의2(청년농업인에 대한 자금지원)</u>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 <u>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·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투자자금을 융자·보조할 수

있다.